

#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104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17년 11월 21일

제안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2017년 7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‘시·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’의 작성주체가 행정안전부장관이므로 개정안의 “소방청장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수정 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- “소방청장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수정함(안 제49조제2호).

#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9조제2항 중 “소방청장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49조(안전관리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<u>국민안전처장관</u>의 시·도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49조(안전관리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소방청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49조(안전관리계획의 수립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행정안전부장관</u> -----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60조(대책본부 문서관리) ①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「<u>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</u>」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60조(대책본부 문서관리) ① ----- ----- 「<u>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</u>」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60조(대책본부 문서관리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
##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제2항 중 “국민안전처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60조제1항 중 “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”  
을 “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9조(안전관리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<u>국민안전처장관</u>의 시·도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60조(대책본부 문서관리) ①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「<u>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</u>」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9조(안전관리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행정안전부장관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0조(대책본부 문서관리) ① ----- ----- 「<u>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</u>」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